#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개정이유

- 「민사소송비용법」 제1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"소 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"으로 정하고 있으므로,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확정 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내재적 제한을 받게 됨
- 현재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제2조제3항에 따르면,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
- 「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」 제5조는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는데, 이와 마찬가지로 「민사소송비용법」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소송비용 감액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### 3. 주요 내용

○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정하되, 그 전 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,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음(안 제2조제4항 신설)

## 4.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2016. . . 공포

#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,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	제2조(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
의 작성료) ① ~ ③ (생 략)	의 작성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〈신 설〉</u>	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,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
	<u>수 있다.</u>

# 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6